

****포럼 정관

제 1장 총 칙

제1조 (명칭) 이 단체는 “****포럼”이라 한다.

제2조 (목적) 이 단체는 과비용 예식문화를 보다 건전하게 변화시켜내고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친환경 ****운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

1.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.

가. 검소한 예식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

나. ****에 대한 참가를 확대하는 활동

다. ****을 통한 나눔 사업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활동

라.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

마. 기타 이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

2.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단 등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단의 조직, 운영, 회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.

제4조 (소재지/지역조직)

1.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
* 서울시 사무소 주소: 서울시 중구 신당5동 171 도로교통공단 신관 3층

2. 이 단체는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.

* 고양 지부 사무소 주소: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한화오벨리스크 1308호

제 2장 회 원

제5조 (자격) 이 단체의 회원은 단체의 목적에 찬성하여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,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개인, 기업, 단체 등으로 구성한다.

제6조 (가입 및 탈퇴)

1. 이 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.
2.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.

제7조 (회원의 권리)

1. 회원은 이 단체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2. 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총회의 소집 요구권 및 출석, 발언권을 가지며, 단체의 변경, 해산, 임원의 선임, 해임, 예산, 결산 승인 등을 심의 및 의결한다.

제8조 (회원의 의무)

1. 회원은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.
2.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9조 (상벌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포상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.

1. 포상 : 이 단체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
2. 징계
 - 가.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 - 나. 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자
 - 다. 이 단체의 사업을 방해한 자
3. 전항의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.
 - 가. 제명
 - 나. 자격정지
 - 다. 경고

제 3장 임 원

제10조 (구성) 단체의 임원은 대표 1인, 5명 이상의 운영위원, 그리고 감사 1인을 둔다.

제11조 (고문 및 자문위원) 이 단체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고문과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
제12조 (임원선출) 단체의 임원은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.

제13조 (임기)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. 단, 임원이 궐위 시에는 총회에서 다시 선출하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4조 (직무) 이 단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2.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본 단체의 일상적인 사업에 대한의 결과에 대해 집행한다.
3. 감사는 본 단체의 재정 및 사업,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. 이의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4장 총 회

제15조 (구성) 총회는 이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16조 (총회의 종류와 소집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대표가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.

1.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2. 운영위원회 결의로서 요청이 있을 때
3.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제17조 (총회의장) 총회의 의장은 대표가 된다.

제18조 (총회성립 및 결의) 총회는 운영위원 과반수가 포함된 회원 50인 이상의 참석(위임포함)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9조 (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1. 정관의 개정
2. 단체의 단체명 변경 또는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
3.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
5. 사업계획의 승인
6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 5장 운영위원회

제20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) 이 단체에 운영위원회를 두며,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구성한다.

제21조 (운영위원장) 운영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, 임기는 3년이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22조 (운영위원회의 소집) 운영위원회는 3개월마다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.

제23조 (운영위원회의 성립 및 의결)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(위임포함)으로 성립하고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4조 (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)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/결산안의 운영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
6. 고문, 자문위원의 추대
7.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

8. 기타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

제 6장 재 정

제25조 (재무)

1. 이 단체의 재원은 회비, 사업익금, 보조금, 기부금 및 기타 잡수익으로 충당한다.
2. 이 단체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후기에 이월한다.

제26조 (회계연도) 이 단체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로 종료한다.

제27조 (예산) 이 단체의 연도별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.

제28조 (결산) 이 단체의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내에 회계연도 말 현재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보고서와 함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도록 한다.

제29조 (재정규정) 이 단체의 재정운영상 필요한 세부 규정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 7장 사무처 및 직원

제30조 (사무처)

1. 이 단체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과 상근 활동가를 둔다.
2. 사무처장은 대표가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.
3. 상근활동가는 사무처장이 추천하고 대표의 승인을 받는다.

제31조 (보수) 이 단체 상근활동가의 보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. 단,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간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8장 보 칙

제33조 (정관변경)

1.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4조 (단체의 해산)

1. 이 단체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2. 이 단체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유사목적용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.

제35조 (정치활동의 제한) 제 10조에서 규정하는 임원, 사무처의 부장급 이상 간부는 정당의 간부가 될 수 없다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****포럼 창립총회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준용) 이 정관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.

******포럼**

제정 2013.02.08

대표 이광렬 (인)

운영위원장 이문열 (인)

운영위원 권오복 (인)

운영위원 김기준 (인)

운영위원 김재숙 (인)

운영위원 진선광 (인)

감사 홍성혁 (인)